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93

발의연월일: 2021. 6. 18.

발 의 자:정청래·강득구·강민정

고영인 · 서동용 · 송갑석

양이원영 · 오영환 · 윤재갑

이규민 · 임오경 · 임호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음.

이번 사고는 지형지물, 구조 등 건물별 특성을 고려해 해체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해체계획서 상의 계획대로 해체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임.

이에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에 건물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, 해체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 장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30조의2제1항). 법률 제 호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"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"를 "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 진행 여부 확인,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2(현장점검) ① 허가권자	제30조의2(현장점검) ①
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	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 진
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	행 여부 확인, 안전사고 예방
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	등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
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. 이 경	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
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	야 한다
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	
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	
하게 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